

**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[펀드코드 : C3106]**

|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[높은 위험]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| 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b>실제 수익률 변동성</b> 을 감안하여 <b>2등급</b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|
| 1    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| 5     | 6       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b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b> 이며,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<b>60%이상</b> 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, 주로 <b>'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'</b> 에 투자합니다. 이에, <b>글로벌 및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</b>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매우 높은 위험             | <b>높은 위험</b> | 다소 높은 위험 | 보통 위험 | 낮은 위험 | 매우 낮은 위험 |   |

이 요약정보는 **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**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·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**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[요약정보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<b>투자목적 및 투자전략</b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li> <li>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, 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정책에 따른 수혜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비교지수<sup>1)</sup>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.</li> <li>비교지수<sup>1)</sup> : KOSPI*95% + Call*5%</li> </ul>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<b>분류</b>                | 투자신탁, 증권(주식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(추가납입가능), 종류형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<b>투자비용</b>              | <b>클래스 종류</b>   | <b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(단위 : %)</b>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<b>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(단위 : 천원)</b>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판매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보수                 | 판매보수        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           | 총보수·비용   | 1년            | 2년  | 3년  | 5년    | 10년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  | 납입금액의 1.0%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200               | 0.500               | 1.370               | 1.2024   | 222           | 349 | 480 | 758   | 1,54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700               | 1.000               | 1.590               | 1.7022   | 174           | 355 | 541 | 931   | 2,024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e)  | 납입금액의 0.5%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950               | 0.250               | 1.010               | 0.9518   | 147           | 248 | 353 | 576   | 1,217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         | 없음  | 1.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500               | 1.190               | 1.2022              | 123  | 251           | 384 | 664 | 1,464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(주1) '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'는 투자자가 <b>1,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(판매수수료+총보수비용)</b>을 의미합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,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로 가정하였습니다.</p> <p>(주2) <b>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,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</b>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(주3)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(주4) '동종유형 총보수'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.</p>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<b>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</b> | <b>종류</b>   | <b>최초설정일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최근 1년</b>        | <b>최근 2년</b>        | <b>최근 3년</b>        | <b>최근 5년</b>   | <b>설정일 이후</b>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22.03.15 ~ 23.03.14 | 21.03.15 ~ 23.03.14 | 20.03.15 ~ 23.03.14 | 18.03.15 ~ 23.03.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판매수수료 미징구형(C)(%)</b>   | 2018-02-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14.69              | -15.00              | 8.59                | -1.68  | -1.23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<b>비교지수(%)</b>           | 2018-02-05  | -10.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11.60              | 9.53                | -0.92               | -1.19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익률 변동성(%) | 2018-02-05 | 15.45 | 14.20 | 18.56 | 18.61 | 18.55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
- (주) 비교지수 : KOSPI\*95% + Call\*5% (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)
- (주2)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
- (주3)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,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운용전문 인력

| 성명  | 생년   | 직위          | 운용현황      |        |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국내주식형) (%) |       |       |       | 운용 경력년수 (공사모 포함)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|             | 집합투자 기구 수 | 운용 규모  | 운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운용사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최근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2년  | 최근1년  | 최근2년  |                  |
| 조동훈 | 1989 | 책임 (매니저)    | 13개       | 1,788억 | -7.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6.69 | -6.75 | -7.94 | 2.8년             |
| 차소윤 | 1987 | 부책임 (수석매니저) | 11개       | 2,914억 | -8.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8.00 | -6.75 | -7.94 | 9.8년             |

- [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자기구: 조동훈-0개, 0억 / 차소윤-0개 0억]
- (주1) '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이 집합투자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'부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  - (주2)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- (주3) 동종집합투자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
  - (주4) '운용경력년수'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.

투자자 유의사항

- **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- **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,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**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또한,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**
- 집합투자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,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요투자 위험

| 구분            |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|
|---------------|--|
| 투자원본 손실위험     |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 |
|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 |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또한,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,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.   |
| 주식가격 변동위험     |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  |
| 금리변동위험        |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,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 |
| 집합투자자기구의 해지위험 |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br>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|

|             |  |   |   |  |
|-------------|--|---|---|--|
|             |  |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 |   |  |
| 매입방법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li> <li>·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|
|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</li> <li>·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</li> </ul> |   |   |  |
| 환매수수료       | 없음   |   |   |  |
| 기준가격        | 산정방법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당일 기준가격=(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-부채총액)/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</li> <li>·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</li> </ul>  |   |  |
|             | 공시장소   | 판매회사 본·영업점, 집합투자업자(www.bnkasset.co.kr)·판매회사·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(dis.kofia.or.kr)에 게시합니다.  |   |  |
| 과세          | 구분   | 과세의 주요내용  |   |  |
|             | 집합투자기구   |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 |   |  |
|             | 수익자  |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  |   |  |
|             |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|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  |  |
|             |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  |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  |   |  |
| 전환절차 및 방법   | 해당사항 없음  |   |   |  |
| 집합투자업자      | BNK자산운용(주) (대표번호 : 02-6910-1100 / 인터넷 홈페이지 : www.bnkasset.co.kr)   |   |   |  |
| 모집기간        |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 | 모집·매출 총액  | 10조좌  |  |
| 효력발생일       | 2023년 03월 31일  | 존속기간  |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|  |
| 판매회사        | 집합투자업자(www.bnkasset.co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|   |   |  |
| 참조          |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|   |   |  |
|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|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,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 |   |   |  |
|             | 종류(Class)  |   |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|  |
|             | 판매 수수료   | 수수료 선취(A)   |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,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 | 수수료 후취  |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 |  |
|             |  | 수수료 미징구(C)  |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 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(AB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,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 |
| 판매 경로       | 온라인(e)   |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  |   |  |

|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          | <b>오프라인</b>              |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 |
|  |           | <b>온라인슈퍼(S)</b>         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<b>기타</b> | <b>펀드, 전문투자자 및 기관(F)</b> |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,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,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|
|  |           | <b>Wrap전용(W)</b>         | Wrap Account용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좌)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|
|  |           | <b>무권유 저비용(G)</b>        |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|
|  |           | <b>개인연금(P)</b>          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 |
|  |           | <b>퇴직연금(P2)</b>         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 |

- 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**
- 증권신고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
  - 투자설명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,  
집합투자업자(www.bnkasset.co.kr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
  - 정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  
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
  - 자산운용보고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www.bnkasset.co.kr)
  - 수시공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www.bnkasset.co.kr)